코로나-19, 해외입국자에 대한 대응조치

2021. 10. 8 (금) 기준

* 아래 사항은 정보제공 차원에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, 중앙 방역대책본부 홈페이지, 서울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특이사항

*** 출처 : http://ncov.mohw.go.kr/**

구 분	상세내용
특이사항	○(6.16) 6월13일(일) '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' 관련 : - **중요사업상, 목적, 학술 · 공익 목적, 인도적 목적** (장례식 참석, 국내 거주하는 직계 가족 방문), **공무국외출장 목적**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**격리면제 가능** - **관광 등 비필수 목적** 입국 시 **격리 면제 불가능** ○(7.1)7월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직계가족 방문 목적으로 국내 입국 시 **격리면제 예정** - **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입국자 적용 제외** - **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 WHO 긴급승인 백신으로 제한하여 적용** ※ 화이자, 얀센, 모더나, AZ, 코비쉴드, 시노팜, 시노벡 - **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** ○(7.4) 인도, 인도네시아, 필리핀, 등 8개국 예방접종자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 추가 - 인도, 인도네시아, 우루과이, 콜롬비아, 아르헨티나, 몰타, 필리핀, 파키스탄 ○(7.6)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후 이동방법 - 가급적 가족 또는 지인의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숙소로 이동 - 불가피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- 대중교통 탑승을 제지당하는 경우, **격리면제서** 또는 여권에 부착한 **해외접종완료자** 스티커 제시 후 탑승 요청 ※ 단, 해외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자와 동반한 사람이 격리면제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, 대중교통 이용 불가능 ○(7.15)해외발 **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에 대한 방역지침 강화**(2021.7.15. 0시 도착 항공편 기준) - 지침 변경 :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항공기 탑승 제한(내외국인 모두 해당) ※ 감염병 기내 전파 및 국내 유입 우려에 따른 방역 당국의 조치 - PCR 음성확인서 기준 : 기존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 - 영유아 동반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서 제출한 경우만 6세 미만 영유아의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- 인도적(장례식 참석) 목적 및 공무 출장 사유 격리면제 내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제외
코로나 검사 등 문의전화	**질병관리본부 국번없이 1339** **강남구 선별진료소** 02-3423-5555 (재난안전대책본부) 강남구 보건소 · 주중(9시~21시) 주말·공휴일 (9시~18시) ※ 한시적 주차장 폐쇄 **강남구임시선별검사소** 삼성역 6번출구(코엑스) · 주중(9시~17시) 주말·공휴일 (9시~14시) ※ 소독 12시~13시 세곡동 방죽공원 · 주중(9시~17시) 주말·공휴일 (9시~14시) ※ 소독 12시~13시 SRT 수서역 · 주중(10시~18시) 주말·공휴일 (10시~18시) ※ 소독 13시~14시 (서울시 운영)

질병관리청

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

<10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제외 국가 안내>

■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시, 자가격리 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(10월)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【주요내용】

○ 우리 청에서는 **국내 코로나-19 예방접종완료자**가 해외에서 입국 시 격리면제 등을 적용(5.5~)하고 있습니다.

다만, **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시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제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 적용을 제외***하고 있으며, 10월에는 아래와 같이 대상국가를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.

※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중 격리면제서 소지자도 동 국가 발 입국자는 격리면제 적용 제외

***10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제외 국가 : 20개국**

나미비아, 남아프리카공화국, 말라위, 모잠비크, 미얀마, 방글라데시, 브라질, 수리남, 앙골라, 우즈베키스탄, 인도네시아, 잠비아, 지부티, 칠레, 카자흐스탄, 키르기즈스탄, 트리니다드토바고, 파키스탄, 페루, 필리핀

※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는 매월 공지 예정

【적용기간】

○ '21. 10. 1. ~ 21. 10. 31. 입국자

【참고사항】

○ 단, 유행국가에 입국하지 않고 **단순히 환승을 위해 공항에서만 체류한 경우는 제외**

출처 : http://ncov.mohw.go.kr/duBoardList.do?brdId=2&brdGubun=23&seq=5705&#=5705

질병관리청

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

(2021.08.26.)

<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시 격리면제 절차 변경 안내>

■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, 격리면제를 위한 충족요건 및 절차가 변경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 (8.30 입국자부터 적용)

* 8.30 이전 입국자는 8.30일 부터 지자체 관할 보건소에 확인 시 변경제도를 소급적용 가능

【주요 변경사항】

①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충족 요건 변경 (8.30일 입국자부터)

(기존) 예방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출국한 경우
→ (변경)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 일 것(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 후 입국한 경우)

* 예시 : 2차 접종일(접종완료일)이 '21.9.1 인 경우, 입국일이 '21.9.16 0시 이후이면 격리면제 가능

② 진단검사 변경 (8.30일 입국자부터)

(기존, 2회) 입국 전 PCR음성확인서, 입국 후 6~7일차
→ (변경, 3회) 입국 전 PCR음성확인서, 입국 후 1일 내, 입국 후 6~7일차

■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(내국인, 장기체류 외국인 포함), 해외에서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※ 단,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입국 시 **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며**, **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요건 미충족 시 격리면제 불가**

【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충족 요건】

①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일 것(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 일 것)
* 예시 : 2차 접종일(접종완료일)이 '21.9.1 인 경우, 입국일이 '21.9.16 0시 이후이면 격리면제 가능

②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결과가 음성일 것

③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

④ 베타,감마,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*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
(공지사항 '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 안내' 참고)

* 단, 베타·감마·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를 입국, 체류 하지 않고 환승을 위해 단순경유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 적용 가능(본인입증 필요),

입국 시 14일이내에 베타·감마·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격리면제 적용이 제외 될 수 있음

【적용절차】

① 입국 시 검역대에 ❶예방접종증명서(종이 또는 COOV 앱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접종스티커),
❷PCR음성확인서(입국 전 현지에서 발급, 발급기준은 공지사항 '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변경 안내'참고)를 제출하여 **예방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입국한 경우를 확인**

② 입국 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**입국 후 1일 내 진단검사 실시** 후 격리면제(수동감시* 전환) 가능 여부 최종 확인

♠ **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를 받고, '음성' 확인시까지는 자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. 입국시 설치한 자가격리앱은 '음성' 확인 시 삭제하시면 됩니다.** ♠

*수동감시 :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,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 받기, 외출 자제 등 생활수칙 준수,
격리면제(수동감시) 기간 중 방역수칙 및 중도출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

※ 단, 요건을 충족하여 격리면제(수동감시 전환)한 경우라도 입국 후 1일내 또는 입국 후 6~7일차에 실시한 **PCR진단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즉시 자가격리 및 확진자로 전환**

③ 거주지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**입국일로부터 6~7일차 진단검사 실시,** 음성인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수동감시 해제

【기타 및 주의사항】

- **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및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중 격리면제서 발급 업무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운영 중**

-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충족 요건 미충족시,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의 격리면제 불가 (기내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경우에도 격리면제 불가)

- **국내 1회 + 국외 1회 접종완료자**의 경우, 국내 발급 **예방접종증명서로 1,2차 접종력이 모두 확인**된다면 '국내 예방접종완료자'로 간주하고, **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조건 충족 시** 격리면제 가능

* 국내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

- 자가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(가능한 자차 이용) 이동 중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

출처: http://ncov.mohw.go.kr/duBoardList.do?brdId=2&brdGubun=23#

*** 출처 : 질병관리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**

▮ 검역대응 절차

□ 유증상자

구분	진단검사	검사결과	조치사항
유증상자 ⇨	입국장 또는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(검역소 격리시설) ⇨	양성 ⇨	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
		음성 ⇨	각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(입국 후 1일내 진단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) ※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에는 격리면제 불가 → 자가 또는 시설격리 조치

□ 무증상자

○일반적인 대응 원칙

구분	예방접종 증명서	PCR 음성확인서	입국 후 1일내 진단검사	격리	추가 검사
내국인 / 장기 체류 외국인	제출 ⇨	제출 ⇨	보건소 ⇨	음성확인 후 격리면제 (능동감시) ⇨	6~7,12~13일째 추가 진단검사 실시(총 2회)
		미제출 ⇨	임시생활시설 (입소비용 본인부담) ⇨	음성확인 후 격리면제 (능동감시) ⇨	6~7,12~13일째 추가 진단검사 실시(총 2회)
	미제출 ⇨	제출 ⇨	보건소 ⇨	자가격리 ⇨	격리해제전 검사
		미제출 *외국인 입국불허 ⇨	임시생활시설 ⇨	시설격리 (14日 입소비용 본인부담) ⇨	격리해제전 검사
단기 체류 외국인 ⇨	※ 세부절차 향후 마련 ⇨	제출 ⇨	임시생활시설 ⇨	시설격리 (14日 입소비용 본인부담) ⇨	격리해제전 검사
		미제출 ⇨	입국불허		

*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가 경과하여 출국한 '예방접종완료자'만 제출

※ 진단검사 결과 '양성'일 경우,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

해외에서 입국 시 이동안내(서울 거주자 한함)

* 출처 :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

① 자차 이용안내

자치구별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	보건소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※ 여권, 항공권 지참	진단 검사 후 바로 거주지 이동	14일간 자가격리! ※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자가격리 필수

② 특별수송택시 이용안내 (이용료는 자부담 6만 5천원~13만원, 구역별 정액요금, 24시간 운영)

서울택시 안내데스크에서 접수 후 차량배차 ▶ T1은 12~13번 게이트 중간 ▶ T2은 2~3번 게이트 중간	보건소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※ 여권, 항공권 지참 ※ 당일검사가 어려울 경우, 예약 후 익일검사	승객 검사 후 특별수송택시 재탑승 ※ 배정된 택시는 검사 종료시까지 기다립니다.	자택 이동 후 14일간 자가격리! ※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자가격리 필수

③ 특별수송버스 이용안내 (이용료 : 16,000원)

입국 수속 후, 인천공항 T1(1층), T2(지하1층) 대합실 이동	노선확인 및 탑승 신고서 작성 ▶ 탑승신고서는 각 구청에 통보, 진단검사 및 자택 이동 등에 활용 (하차이후에 거주지 이동할 자차없는 부득이한 경우, 구청차량 요청가능)	버스탑승 및 자치구별 하차지(보건소 선별진료소) 로 이동	구청 담당자 안내에 따라 진단검사 후 거주지로 이동 (개인차량을 우선이용 권고, 없을 경우에만 구청차량 이용)

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제도 2020.12.10부터 시행

*출처:중앙방역대책본부

구 분	내 용
도입목적	감염병 및 테러 위기상황에서 한국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지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사회·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
신고 시기	'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'에 따른 '관심' 이상의 위기정보 발령 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'주의'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
단기체류 외국인의 신고의무	숙박업자에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제공 (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)
숙박업자의 신고의무	외국인이 숙박할 때 또는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내에 투숙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의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 (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)
신고방법	숙박업자는 2021년 상반기 중 별도 숙박신고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 별지 서식에 맞춘 투숙 외국인 정보를 이메일, 전화, 팩스 등을 활용해 관할지방 출입국·외국인고나서에 신고

*경보단계 : '관심', '주의', '경계', '심각'

**관광,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 기간 동안 머무는 체류 외국인

***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,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, 외국인 관광 도심민박업,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자

*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 (www.hikorea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